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소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소영, 경만선, 김춘례,
김태호, 노승재, 신원철,
안광석, 오한아, 유 용,
이종환, 최영주, 황규복
의원(12명)

찬 성 자 : 김소양, 김정태, 김제리,
김화숙, 문병훈, 이성배,
이승미, 이호대, 황인구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을 행사하므로 결과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,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서울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- 또한 현재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5인 이하의 소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권고까지 시행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 바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분리함(안 제18조)
- 나.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명시함(안 제19조)
- 다.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 기능을 명시함(안 제20조)

라.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등 운영사항을 명시함
(안 제21조)

마.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사항을 시장의 책임
으로 지정함(안 제2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목을 “시민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의 “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인권보호관”)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인권보호관은 3명 이상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및 운영한다.

③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8조제4항의 “비상임 보호관”을 “구제위원회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
⑥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8조제7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의 제목을 “위원장 직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9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.

제20조의 제목을 “기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의 “구제위원회는”을 “인권보호관은”으로, “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”를 “조사한다. 다만,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“구제위원회는”을 “인권보호관은”으로, “해당 사건을 각하한다.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조사할 수 없다.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에 대한 사항
2.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
3.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
4.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운영)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

회를 소집한다.

-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구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 밖에 구제위원회 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 제목을 “인권보호관 및 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”으로 하고, 본문의 “시민인권보호관”을 “인권보호관 및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 중 “보호관”을 각각 “인권보호관 및 위원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의 “상임 보호관”을 “인권보호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상임 보호관”을 “인권보호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의 “상임 보호관”을 “인권보호관”으로 하고, “외부 전문가”를 “구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의 “있으며,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”를 “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“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위 결과를”을 “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 권고 사항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의 “2월”을 “2개월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5항의 “구제위원회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 하며, “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”를 “점검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의 “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”을 “사무를 지원하는 간사 1명을”로 하고, “비상임 보호관”을 “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장 <u>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</u></p> <p>제18조(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<u>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 <p>② <u>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보호관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,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	<p>제4장 <u>시민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</u></p> <p>제18조(설치 및 구성) ① ----- ----- <u>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인권보호관”)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”)---</u>.</p> <p>② <u>인권보호관은 3명 이상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및 운영한다.</u></p> <p>③ <u>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④ <u>구제위원회 위원----- ----- -----.</u></p>

1. ~ 4. (생략)

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.

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9조(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)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,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

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하여 보장된다.

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⑤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
⑥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<삭제>

제19조(위원장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삭제>

<삭제>

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0조(직무) ① 구제위원회는 인
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
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
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
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
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
을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상임 보
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
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
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
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
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, 조사
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
한다.

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
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
해당 사건을 각하한다. 다만 제6
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
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제20조(기능) ① 인권보호관은 ----

----- 조사한다. 다만, 인권침해
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
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
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
있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② 인권보호관은 ----

----- 조
사할 수 없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

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정
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
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

<신 설>

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
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
인권침해결정에 대한 사항
2.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
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
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
여부에 대한 사항
3.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시정
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
4.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
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
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<삭 제>

제21조(운영) ① 구제위원회는 월 1
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
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
를 소집한다.

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구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
여야 한다.

④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

제21조(보호관의 제척 등) 시민인권

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·결정에서 제척된다.

1.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
4.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5.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,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

제22조(조사수행) ① 상임 보호관은

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

수 있으며,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2조(인권보호관 및 구제위원회

위원의 제척 등) 인권보호관 및 위원-----

-----.

1. 인권보호관 및 위원-----

2. 인권보호관 및 위원-----

3. 인권보호관 및 위원-----

4. 인권보호관 및 위원-----

5. 인권보호관 및 위원-----

제23조(조사수행) ① 인권보호관-----

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
· 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을 요구
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
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
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
하여야 한다.

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
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
여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3조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 ①

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
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
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인권침해 결
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
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
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
야 하며,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
및 피신청인, 조사대상기관의 장
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
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인권보호관-----

-----.

④ 인권보호관-----
-- 구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외
부 전문가 -----
-----.

제24조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 ① -

----- 있다.

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
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
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
여야 하며, 통지받은 날로부터 2
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
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
다.

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
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
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

제24조 (생략)

제25조(구제위원회 지원) ① (생
략)

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
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
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
며,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
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
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
수 있다.

제26조 (생략)

----- 2개월

-----.

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
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
검하여야 한다.

제25조 (현행 제24조와 같음)

제26조(구제위원회 지원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
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
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예산
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
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
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
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 (현행 제26조와 같음)